

경찰청

우 120-704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미근동 209) /전화 일반 313-0565 경비 2496 /전송 3895

국가보안법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보안1과 과장 김인택 경정 이자하 담당자 김형균 hkkim7707@hanmail.net

문서번호 보일63720-2585

시행일자 2003.12.23. (1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받음 서울 광진구 화양동 1번지
법과대학 학생회 이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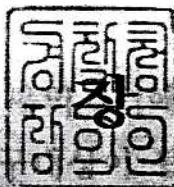
참조

선팽		지시	
접수	일자 시간 번호	결재	
		·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심사자	심사일	

제목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내용 통보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구자료를 불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불임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자료 1부. 끝



경찰청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자료

1.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판정시

(1)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 제3장 제24조③항

(2) 공안문제연구소는 대상 문서를 이적표현물이라 판단할 만한 권위를 가진 기관입니까? 답변에 따른 근거는 무엇입니까?

-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념관련 학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하면서 의뢰한 문건은 객관적 사실판단만 적시하고 있음.

(3) 공안문제연구소 외에 다른 권위있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적은 있습니다?

- 공안문제연구소 외 타 기관을 대상으로 감정의뢰 한적 없음.

2.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해

(1) 공안문제연구소의 설치근거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

- 근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 제3장 제24조③항, 경찰대학설치법 12조
- 목적 :
 -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공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기타, 국가안전보장의 저해와 관련된 사상, 조직, 이론 및 그 대책에 관한 것 (공안문제연구소운영규칙 제2조1호 참조)

(3) 우익사상에 의한 국가안전과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 우익세력에 의한 '쿠데타를 선동하는 듯한 글'도 "공안"에 포함되어 연구대상이 됩니까?

- 공안문제연구소운영규칙 제2조1호 참조

(4) 연구소의 조직구성은 어떠한 체제로 되어있으며, 이적표현물이라 판단하는 역대 연구원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연구소는 연구소장 밑에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연구분석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원^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9명이며, 박사학위수료자는 3명이 있음.

(5) 이적표현물이라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와 분류절차 및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 이적표현물의 판단근거는 연구관등의 학술적인 식견에 의거하여 객관적 사실판단만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적성 여부를 법관이 판단함에 있어서 구속력이 전혀 없음..

* 공안문제연구소 ; 캐나다인
→ 사건 보고 → 국가보안법 폐지.

수신 : 사회인권단체

발신 : 김용찬·김종곤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담당 이호영 016-9575-9250)

참조 : 담당자

일자 : 2003. 12. 9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제안

1.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인권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 지난 7월 건국대학교 학생 2명에 대한 연행·구속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을 계속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공안기관의 행태는 결국 사회민주화로 인해 줄어드는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의한 것입니다.

3. 국가보안법의 이론적 지반 역할을 하는 경찰대학교 산하 공안문제연구소는 각종 저서에 대해 그 규정을 함으로써 해당 저서가 가지는 명예를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 및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건국대 대책위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규정함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했음을 사회인권단체와 함께 고소하고, 이와 더불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해당 저작의 저자, 역자, 출판사, 서점 및 관련 피해자 등 모집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4. 위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고소 제안을 드리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김용찬 · 김종곤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정보공개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김용찬·김종곤 학우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법과대학 학생회	(전화번호 : [REDACTED])	
	신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개인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교수·교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 보 내 용		1.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이적표현물 판정시 (1)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2) 공안문제연구소는 대상 문서를 이적표현물이라 판단할 만한 권위를 가진 기관입니까? 답변에 따른 근거는 무엇입니까? (3) 공안문제연구소 외에 다른 권위있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2.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해 (1) 공안문제연구소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 (2)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공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 우익사상에 의한 국가안전과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 우익세력에 의한 ‘쿠데타를 선동하는 듯한 글’도 “공안”에 포함되어 연구 대상이 됩니까? (4) 연구소의 조직 구성은 어떠한 체계로 되어있으며, 이적표현물이라 판정하는 역대 연구원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5) 이적표현물이라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와 분류 절차 및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 용 목 적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 <input type="checkbox"/> 사업관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감시 <input type="checkbox"/> 쟁송관련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 개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문서답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03년 12월 ~ 9일				
청 구 인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 하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1인의 대표자 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및 사회인권단체

발신 : 김용찬·김종곤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담당 이호영 016-9575-9250)

참조 : 사회부 기자 및 담당자

일자 : 2003. 12. 9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 관련 정보공개 청구

1.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 및 사회단체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 저희 '김용찬·김종곤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이하 건국대 대책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혐의 적용시 경찰은 그것을 너무나 자의적이며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실체를 알 수 없고, 제대로된 권위도 갖고 있지 않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1)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 판정 과정

2) 공안문제연구소

에 대한 정보공개를 오늘 12월 9일 경찰청에 청구하였습니다.

3.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월 1일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3일에는 아주대학교 출신 회사원, 군인, 학생 8명을 무더기로 연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건국대학교 학생 2명에 대한 연행·구속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을 계속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공안기관의 행태는 결국 사회민주화로 인해 줄어드는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 건국대 대책위는 국가보안법 이론의 기반 노릇을 하는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더불어, 이후 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고소 등으로 기관의 실체와 활동 내용을 밝힘으로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각 언론사 및 사회인권단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 사안에 대한 보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고소 제안서(수신-사회인권단체) 1부

김용찬·김종곤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